

부산지방법원 2023. 8. 17 선고 2022가단342156 판결 [구상금등 청구의 소]

전 문

원 고 A 주식회사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하

담당변호사 최병주

피 고 B

변 론 종 결 2023. 7. 6.

판 결 선 고 2023. 8. 17.

주 문

1. 피고는 C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286,418,540원 및 그 중 7,150,000원에 대하여는 2022. 8. 9.부터 2022. 9. 7.까지 연 6%, 4,180,000원에 대하여는 2022. 8. 10.부터 2022. 9. 8.까지 연 6%, 23,106,600원에 대하여는 2022. 8. 17.부터 2022. 9. 15.까지 연 6%, 30,109,200원에 대하여는 2022. 8. 25.부터 2022. 9. 23.까지 연 6%, 36,460,740원에 대하여는 2022. 8. 31.부터 2022. 9. 29.까지 연 6%, 30,334,160원에 대하여는 2022. 9. 2.부터 2022. 10. 1.까지 연 6%, 143,857,840원에 대하여는 2022. 9. 6.부터 2022. 10. 5.까지 연 6%, 11,220,000원에 대하여는 2022. 9. 16.부터 2022. 10. 15.까지 연 6%, 각 그 다음날부터 2022. 10. 31.까지 연 9%,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자백간주판결 :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

판사 장용기

별지

청 구 원 인

1. 보증보험계약 및 연대보증약정의 체결

가. 원고는 2021. 6. 28. 한도거래금액을 30억 원으로 하여 C 주식회사(이하 '위 회사'라 한다)와 사이에 보증보험 한도거래약정을 체결하였다(이하 '이 사건 한도거래약정'이라 한다).

나. 피고는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원고와 위 회사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한도거래약정에 따른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.

다. 이 사건 한도거래약정에 의하면, 위 회사는 이 사건 한도거래약정에 기하여 체결되는 보증보험계약의 피보험자들에 대한 채무 또는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(이하 '보험사고'라 한다) 원고가 대위변제하는 경우 지연손해금(대위변제 다음날부터 30일까지는 연 6%, 30일 경과 후부터는 연 9%)을 부담하기로 되어 있고, 보험사고 등의 사유가 발생할시 원고로부터의 사전통지 또는 최고가 없더라도 원고가 보증하고 있는 금액에 대하여 사전구상채무를 부담하기로 되어 있다.

라. 이에 따라 위 회사는 2021. 7. 9.부터 2022. 2. 24.까지 총 11회에 걸쳐 다수의 피보험자들과 사이에 '승강기 제조, 판매 및 설치공사계약'에 따른 계약보증, 하자보증, 선금보증 등을 담보하기 위한 보증보험계약(이하 '이 사건 각 보증보험계약'이라 한다)을 각 체결하였다.

2. 사전구상권의 취득 및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금 채권의 발생

가. 위 회사의 주식회사 D에 대한 채무불이행 등으로 인하여 원고는 위 회사와 피고

에 대해 이 사건 각 보증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액 상당의 사전 구상권을 취득하였다.

나. 이후 위 회사의 계약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위 각 피보험자들의 보험금 지급청구에 의해서 대위변제가 이루어짐으로써, 원고는 위 회사와 피고에 대하여 286,418,540원의 구상채권을 취득하였습니다.

다. 따라서 피고는 위 회사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대위변제금의 합계액인 286,418,540원과 이에 대하여 주문 기재의 약정연체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